

EU 의회, AI 법 가결

- 위반 시 최대 매출 7% 과징금 등 내용 담겨 -

기술 규제의 선두주자로 항상 나서는 EU가 세계 최초의 규제를 도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U 의회는 2024. 3. 13. AI법을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가결시켰습니다. Chat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가 연일 화제되는 지금, AI에 대한 본격 규제의 신호탄이 된 EU의 AI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EU집행위원회는 2021. 4. 21.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 초안을 발표하였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거쳐왔습니다. EU집행위원회가 최초 제안할 당시에는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으나, 이후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화제가 되면서 유럽의회가 2023. 6. 14. 가결한 협상안부터는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에 대한 규정도 도입되었고, 이후 이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General-Purpose AI Models)에 대한 규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후 2023. 12. 9.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과 유럽 의회 협상단이 3일 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절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뒤이어 2024. 2. 2. 유럽연합 이사회 상주대표위원회(Committee of 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COREPER')가 위 잠정 합의 사항을 반영하고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정된 추가 수정안을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4. 6.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의회는 2024. 3. 13. 마침내 본 회의에서 위 추가 수정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형식적인 사항만 수정한 버전으로 가결 처리하면서 올해 내에 최종 법안이 공포되고 발효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이번에 가결된 EU AIA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① 금지되는 인공지능(Chapter II), ② 고위험 인공지능(Chapter III), ③ 투명성 의무가 부여되는 인공지능(Chapter IV), ④ 범용 인공지능 모델(Chapter V)의 4종류로 나누어 인공지능 시스템 공급자 등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 기관에게 부여되는 의무사항을 규정합니다(Chapter X). [EU AIA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원문 전체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분	주요 내용
<p>금지되는 인공지능 유형*(Chapter 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의 의식 조작이나 취약계층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행동을 왜곡시키고 의사 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 사회적 행위에 기반한 사회적 평점 시스템(social scoring)으로 특정 자연인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유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 • 프로파일링에만 기반한 범죄 예측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인터넷이나 CCTV로 수집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스크랩하여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 직장 및 교육현장 내 자연인의 감정 추론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공개된 장소에서 법 집행을 위해 사용되는 실시간 원격 생체 시스템
<p>고위험 인공지능에 부여되는 의무사항 (Chapter I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인공지능은 ① 별지 I에 따라 제3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과 관련성이 있거나, ② 별지 III에 따라 기반시설, 교육, 고용, 의료·은행 등 핵심 공공·민간 서비스, 국경통제, 사법절차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 고위험 인공지능은 ① 리스크 관리 시스템, ② 데이터와 데이터 거버넌스, ③ 기술문서화, ④ 기록 보존, ⑤ 설명 가능성, ⑥ 인간에 의한 감독, ⑦ 정확성, 견고성, 사이버 보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요건에 기반하여 공급자(provider)에서 활용자(deployer)에 이르는 공급 체인을 따라 각각에게 부여되는 의무 사항이 있음 •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자(deployer)가 공공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에 노출된 자연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기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p>특정 투명성 의무가 부여되는 인공지능 (Chapter I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인을 직접 상대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공급자는 해당 자연인이 대하고 있는 상대가 인공지능임을 밝혀야 함 • 생성형 인공지능의 공급자는 그 산출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함 • 감정 인식 시스템 또는 생체 분류 시스템의 활용자는 해당 시스템에 노출되는 자연인에게 시스템의 운용 및 개인 정보 처리 사실을 밝혀야 함 • 생성·조작된 이미지나 딥페이크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의 활용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공개해야 함
<p>범용 인공지능 모델에 부여되는 의무사항 (Chapter 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용 인공지능 모델의 경우 그 규모나 학습량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한 경우 '시스템리스크가 있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로 별도 분류함(예컨대, Open AI의 GPT4와 Google의 Gemini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범용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술문서화 등의 의무 이외에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조치 의무를 부과함 • 시스템리스크가 있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의 경우 적대적 공격 평가 등을 통하여 잠재적인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는 등의 추가 의무를 부담
<p>행동강령의 자발적 시행 권장을 위한 규제기관의 의무 (Chapter 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사무소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자가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
<p>과징금 (Chapter X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위반 시 위반 유형에 따라 기업의 전 세계 연매출액 1%~7% 또는 750만 유로~3,500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가능
<p>부칙 (Chapter XI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발효 후 2년 경과 시부터 시행 • 단, 금지된 인공지능에 관한 규정은 발효 후 6개월 경과 시 적용 • 범용 인공지능 모델에 관한 규정은 발효 후 1년 경과 시 적용 • 별지에 따른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한 규정은 발효 후 3년 경과 시 적용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

3. 시사점

이제 EU AIA는 Corrigendum이라 불리는 법안의 형식적인 부분의 검토 절차를 거치고 유럽연합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기만 하면 되고, 이는 모두 2024. 5.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모두 확정된 상태로 볼 수 있고, EU 관보에 등재되어 발효되는 순간까지는 불과 몇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AI에 대한 법규 마련 경쟁에 전 세계 주요국들이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AI 자료에 식별용 워터마크를 부착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고, 중국은 2024년 3월 AI+ 행동이란 산업 육성책을 발표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AI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나, 이번 EU의 진전을 기폭제로 하여 전 세계 흐름에 맞게 다가오는 총선 후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때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있습니다. AI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e@yoonyang.com

정호선

변호사

T. (+82) 2 6182 8548

E. junghs@yoonyang.com

유현상

변호사

T. (+82) 2 6182 8716

E. hsryu@y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T. (+82) 2 6182 8505

E. kangsj@yoonyang.com

배종우

변호사

T. (+82) 2 6182 8745

E. jwbai@yoonyang.com